

보도 일시	2022. 10. 16.(일) 12:00 2022. 10. 17.(월) 조간	배포 일시	2022. 10. 16.(일)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	책임자	과 장 김진숙 (044-202-8850)
		담당자	사무관 신정욱 (044-202-8853)

산업현장 애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

- 이동식 사다리 제작·사용기준 마련
-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증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개선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“이동식 사다리 제작·사용기준 마련”, “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증 재질 개선(알루미늄)” 등 산업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안전규제를 개선한다.

❶ 먼저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준과 제작기준이 마련된다.

현재 이동식 사다리는 2m 미만의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 인증*(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)받음에도, 산업현장에서 사다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.

* (종류) ①주택용 사다리, ②도배용 사다리, ③원예용 사다리, ④계단식 소형 사다리

그러나 높은 편의성으로 이동식 사다리가 산업현장에서 작업도구로 지속 사용되는 등 이동식 사다리로 인한 사망사고*는 지속해서 발생('17년 이후 187명)하고 있다.

* 26명('17년) → 43명('18년) → 41명('19년) → 30명('20년) → 30명('21년) → 17명('22.7월)
↳ 138명(작업 중), 49명(이동 중)

이에 사다리 형태의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사다리형 작업대 제작기준을 마련('22년)하여 안전성을 갖춘 사다리를 산업현장에 보급하고, 사다리류에 대한 안전한 사용기준을 마련('23년)할 계획이다.

제작기준 및 사용기준 마련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공단은 건설업계, 주택관리업계 등 사용자와 학계·노동계의 의견을 수렴*할 계획으로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“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”에 따라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다.

* (간담회) 10.26. 10:00 ~ 17:00 / 서울 KTX역 회의실 (참석문의) 052-703-0937

향후 사다리 제작·사용기준이 마련되면 안전한 사다리 사용으로 낮은 높이에서 떨어짐 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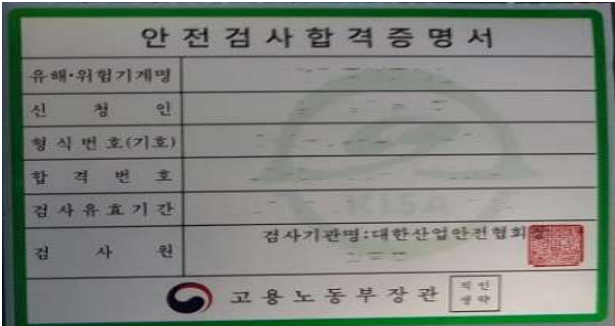
②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재질이 개선된다.

프레스, 크레인, 압력용기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(13종)는 안전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(2년마다)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, 안전검사 합격 시 스티커 형태의 합격증명서*가 발급됐다.

* (미부착 벌칙) 과태료(1대당) 1차 50만원, 2차 250만원, 3차 500만원

그러나 외부에 설치된 위험기계·기구의 경우 햇빛·눈·비 등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떨어지기 쉬워 사업주가 부착상태로 유지하기 어렵고 취급하는 근로자도 안전검사 실시 여부를 알 수 없었다.

이에, 법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안전검사 합격증명서를 훼손이 적은 재질(알루미늄)로 개선하고, 개선된 재질의 합격증명서에 위험기계기구의 제작 정보 및 이력, 취급 시 주의사항, 최근 사고동향 등을 큐아르(QR) 코드로 담아 사업주·사용자가 재해예방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창구로도 활용한다.

現) 합격증명서(종이 재질의 스티커)	改) 합격증명서(알루미늄 재질) 예시
	

개선된 재질의 합격증명서는 2022년 11월부터 부착되기 시작하여 2년 검사 주기가 돌아오는 2024년까지 약 72만대의 전체 안전검사 대상품에 부착될 예정이다.

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“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규제는 산업현장에서 준수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한다”라고 하면서

“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것”임을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김진숙 (044-202-8850)
		담당자	사무관	신정욱 (044-202-8853)
<공동>	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	책임자	부 장	박동률 (052-703-0901)
		담당자	차 장	이재영 (052-703-0903)
<공동>	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송유나 (044-202-7064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이창주 (044-202-7060) 이민정 (044-202-7062)



산재 사고사망 절반으로 줄입니다!

안전은
관리입니다

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이것만은 꼭 준수하세요!

사다리 사용이
불가피한
경작업에
한하여

▣ 경작업, 고소작업대·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
협소한 장소에서 사용

* 경작업 :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
전구교체 작업, 전기통신 작업, 평탄한 곳의 조정 작업 등



평탄·견고한
바닥에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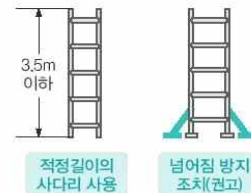
▣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



3.5m 이하의
A형 사다리를
사용하여

▣ 최대길이 3.5m 이하 A형 사다리(조경용 포함)
에서만 작업

* 보통(일자형)사다리, 신축형(연장형)사다리, 일자형으로
펼쳐지는 발붙임 겸용 사다리(A형)에서는 작업금지



보호구를 반드시
착용하고

▣ 모든 사다리 작업 시 안전모 착용,
작업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

* 작업높이 : 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



2인 1조로
작업하세요!

작업높이가 바닥 면으로부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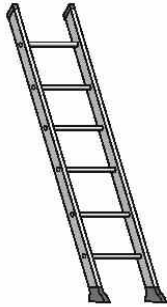
▣ 1.2m 이상 ~ 2m 미만 : 2인 1조 작업,
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
▣ 2m 이상 ~ 3.5m 이하 : 2인 1조 작업,
최상부 및 그 하단의 디딤대에서 작업금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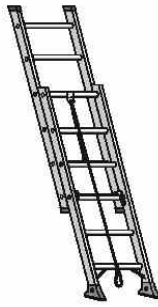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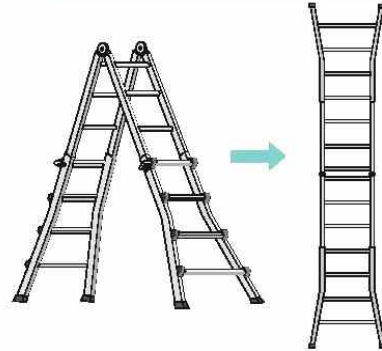
※ 본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 →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
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

보통(일자형) 사다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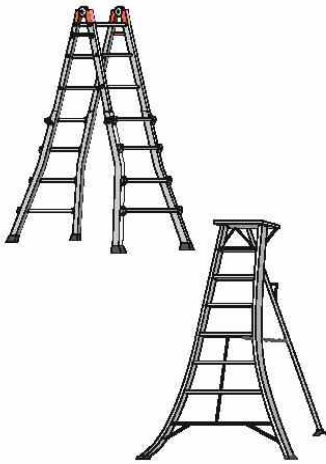
신축형(연장형) 사다리

발붙임 사다리(A형)
(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)

안전작업 지침

- 오르내리는 **이동통로로만 사용** (발판 및 디딤대에서 작업금지)
- 반드시 안전모 착용
- ※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「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」 준수

발붙임 사다리(A형, 조경용)



작업 높이 (발을 딛는 디딤대의 높이)	안전작업 지침
1.2m미만	○ 반드시 안전모 착용
1.2m이상 ~ 2m미만	○ 반드시 안전모 착용 ○ 2인 1조 작업 ○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
2m이상 ~ 3.5m이하	○ 반드시 안전모 착용 ○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○ 최상부 발판 + 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
3.5m초과	○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

공통사항

-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
- 경작업*, 고소작업대·비계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
- *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, 전기·통신 작업, 평탄한 곳의 조경 작업 등
- ※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「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」 준수